#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7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김재원·김선민·신장식

이해민 • 이기헌 • 민형배

김준형 · 황운하 · 이개호

임오경 · 위성곤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 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 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개 정 안 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 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 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 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 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 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